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8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4년 4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4년 4월 7일

2. 제안이유

- 2014학년도 2학기 서울특별시립초등학교 2개교, 유치원 5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3개교, 유치원 2개원의 위치를 변경하며, 초등학교분교장 1개소를 설치하고, 도로명주소에 변동이 있는 학교 2개교의 주소를 변경하며, 2015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기 위함.

3.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11조
- 「유아교육법」 제9조
-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5조의2

4.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 신설 2개교, 위치변경 3개교, 분교장 설치 1개소,
도로명주소 변경 2개교

□ 신설

○ 강남교육지원청

- 서울울현초등학교 (강남구 울현동 231)
- 서울자곡초등학교 (강남구 자곡동 502-3)

□ 위치변경

○ 강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
(강서구 양천로55길 22 ⇒ 강서구 공항동 1324)
- 서울공항초등학교
(강서구 공항대로 91 ⇒ 강서구 공항동 399)

○ 강남교육지원청

- 서울언남초등학교
(서초구 염곡안1길 25 ⇒ 서초구 내곡동 122)

□ 분교장 설치

○ 강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 (강서구 양천로55길 22)

□ 도로명주소 변경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영원초등학교
(영등포구 도신로29아길 14⇒영등포구 도영로22길 31)

○ 강남교육지원청

- 서울잠원초등학교

(서초구 사평대로23길 14⇒서초구 신반포로16길 15-25)

나. 방송통신중학교 : 신설 1교

□ 신설

- 서부교육지원청

- 아현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마포구 마포대로 247)

다. 유치원 : 신설 5개원, 위치변경 2개원

□ 신설

- 동부교육지원청

- 서울새솔유치원 (중랑구 신내동 241)

- 강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

(강서구 양천로55길 22)

- 강남교육지원청

- 서울울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남구 울현동 231)

- 서울자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남구 자곡동 502-3)

- 서울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초구 내곡동 122)

□ 위치변경

- 강서교육지원청

- 서울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양천로55길 22 ⇒ 강서구 공항동 1324)

- 서울공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공항대로 91 ⇒ 강서구 공항동 399)

5. 검토의견

가. 신설

- 세곡2보금자리지구(SH공사)와 강남보금자리지구(LH공사)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 제24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의결하여 “서울울현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과 “서울자곡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신설을 결정하였는 바, 동 조례안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 하겠음. 다만, 현재 도로명주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도로명주소로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음.
- 아현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중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예컨대 학업 중단 학생,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중학교의 수요자가 교육소외계층임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마련해주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며 개교시기에 맞추어 교육과정, 입학자격 등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서울새솔유치원은 신내3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의 증가유아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 제24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확정된 사업이므로 동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음.

나. 위치 및 도로명주소 변경

- 서울공항초등학교 이전은 강서구 일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 제226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함으로써 확정되었고,
- 서울언남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서초구 내곡보금자리지구 개발로 학교설립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제24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의결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동 개정안은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라 하겠음.
- 서울영원초등학교 및 서울잠원초등학교의 도로명주소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개정이므로 타당한 조치라 하겠음.

다. 공진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분교장 설치(분교장병설유치원 포함)

- 서울공진초등학교 이전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됨으로써 확정되었음.
- 그러나 공진초등학교를 마곡지구내로 이전·신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현 공진초등학교 학생은 탑산초등학교로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현 공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기 중의 학생 전학으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위화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탑산초등학교로의 전학을 한 학년이 끝나는 2015년 3월로 요구하게 되었음.¹⁾

- 따라서 현 공진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탑산초등학교로의 전학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공진초등학교를 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으로 활용하는 것(유치원 포함)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다만, 동 분교장은 201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존속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직원 의 복무 및 학교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공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은 2014년 8월 28일이 개교예정 일임에도 2014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정율이 동 조례안의 다른 신설 학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바,(공진초등학교 28.6%, 병설유치원 28.6%)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개교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분교장 설치(전학시기)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참여학부모 87명 중 85명이 분교장 설치(2015. 3. 1 전학)를 찬성함.

관 계 법 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69호, 2013.5.22., 일부개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4.1.24.] [법률 제12129호, 2013.12.30., 일부개정]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설치)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